#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윤창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8221 발의연월일: 2022. 11. 11.

발 의 자 : 윤창현 · 조명희 · 김영식

박수영 · 송언석 · 구자근

박대수 · 김성원 · 김용판

김정재 · 박성민 의원

(11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「도심융합특구 조성을 통한 지방 역세권 등 개발지원과 지역혁신 선도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은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의 추진을 위 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토지 등의 수용·사용권을 부여하고 있는바, 이 에 맞추어 토지등을 수용·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의 근거를 규정하 고 있는 현행법 관련규정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 는 공익사업에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을 추가함(안 별표 제2호(94) 신 설).

### 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윤창현의원이 대표 발의한 「도심융합특구 조성을 통

한 지방 역세권 등 개발지원과 지역혁신 선도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(의안번호 제2117440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법률 제 호

##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제2호에 (94)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(94) 「도심융합특구 조성을 통한 지방 역세권 등 개발지원과 지역 혁신 선도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23조에 따른 도심융합특 구개발사업

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